

#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325
----------	------

제출년월일 : 2020년 2월 5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조례 취지에 부합하도록 일부 용어를 변경하고,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운영의 효율성 향상 및 심의의 공정성 제고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집행기관”을 “서울특별시 및 산하기관” 또는 “공개대상기관” 등으로 변경함(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제12조 및 제13조)

나. 행정정보 공표 대상을 현행화하고,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정보공개 사항에 담당부서 항목을 삭제함(안 제5조)

(1) 행정정보 공표대상 항목 중 현재 시행하지 않는 목표관리제 관련 현황을 삭제하고, 균형성과관리 현황을 신설함.

(2) 규칙에서 담당부서까지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직개편 때마다 실제 공표 부서와 규칙에 정해진 부서가 불일치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는 사항에서 담당부서는 제외함.

다.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

(1) 심의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도록 하는 조항 삭제함(안 제7조)

(2) 위원의 해촉 사유와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명시함(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

(3)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당연직 위원 중 언론담당관 및 시설계획과장을 제외함(안 제11조)

라. 공개대상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주체를 서울특별시장으로 명시함(안 제12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다.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2) 입법예고(2019. 10. 24. ~ 11. 13.) 결과: 의견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산하 집행기관”을 “산하기관”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다”를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집행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소속 행정기관”을 ““공개대상기관”이란 서울특별시(직속기관, 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집행기관”을 “공개대상기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집행기관”을 “공개대상기관”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집행기관의 책무)”를 “(공개대상기관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집행기관”을 각각 “공개대상기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및 제7호 중 “집행기관”을 각각 “공개대상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6호 중 “집행기관”을 “공개대상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개주

기·시기·방법·담당부서”를 “공개주기·시기·방법”으로 한다.

#### 15. 서울특별시 균형성과관리 현황

제7조제1항 중 “집행기관”을 “공개대상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집행기관”을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공개대상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집행기관별”을 “공개대상기관별”로 한다.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위원의 해촉)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2. 제7조의3에 따라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②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제1호 및 제3호 중 “집행기관”을 각각 “공개대상기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국장·언론담당관 및 시설계획과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제1항 중 “집행기관의 장은 정보공개”를 “서울특별시장은 공개대상기관의 정보공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집행기관”을 “공개대상기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집행기관”을 “공개대상기관”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및 <u>산하 집행기관</u>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소통과 협력을 통한 열린 시정을 구현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u>산하기관</u>----- ----- ----- ----- ----- ----- ----- -----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u>집행기관</u>”이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소속 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을 말한다.</p> <p>2. “<u>청구인</u>”이란 행정정보의 공개를 <u>집행기관</u>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p> <p>3. ~ 4. (생략)</p>	<p>제2조(정의) ----- ----- <u>같다.</u></p> <p>1. “<u>공개대상기관</u>”이란 서울특별시(직속기관, 사업소 및 합의회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p> <p>2. ----- ----- <u>공개대상기관</u>----- -----.</p> <p>3. ~ 4. (현행과 같음)</p>
<p>제3조(정보공개 원칙) ① <u>집행기관</u>이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는 소중한 공공자산으로서 법령과 이</p>	<p>제3조(정보공개 원칙) ① <u>공개대상기관</u>----- -----</p>

현행	개정안
<p>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p>	<p>----- -----.</p>
<p>② ~ ④ (생략)</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4조(집행기관의 책무) ① 집행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보관하여 행정정보의 공개 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제4조(공개대상기관의 책무) ① 공개대상기관----- ----- -----.</p>
<p>② 집행기관의 장은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에 공개하여야 하며, 행정정보공개 접수창구를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p>	<p>② 공개대상기관----- ----- ----- ----- -----.</p>
<p>③ 집행기관의 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확대와 소통 증대를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며,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③ 공개대상기관----- ----- ----- ----- -----.</p>
<p>제5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p>	<p>제5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공개대상기관-----</p>

현행	개정안
<p>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례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 ----- ----- ----- ----- -----</p>
<p>1. (생략)</p>	<p>1. (현행과 같음)</p>
<p>2. 제1호의 계획 중 <u>집행기관</u>이 정한 것에 관계된 중간 단계의 안</p>	<p>2. ----- <u>공개대상기관</u>-----</p>
<p>3. ~ 6. (생략)</p>	<p>3. ~ 6. (현행과 같음)</p>
<p>7. <u>집행기관</u>에서 징수하는 사용료,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p>	<p>7. <u>공개대상기관</u>----- -----</p>
<p>8. ~ 14. (생략)</p>	<p>8. ~ 14. (현행과 같음)</p>
<p>15. <u>목표관리제와 관련하여 실·국장 추진 목표 및 목표관련 예산 집행 현황</u></p>	<p>15. <u>서울특별시 균형성과관리 현황</u></p>
<p>16. 기타 <u>집행기관</u>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업무</p>	<p>16. -- <u>공개대상기관</u>----- -----</p>
<p>② (생략)</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의 세부 공개내용 및 <u>공개주기·시기·방법</u></p>	<p>③ ----- ----- ----- <u>공개주기·시기·방법</u> -----</p>



현행	개정안
<p>·<u>담당부서</u>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p> <p>① <u>집행기관</u>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p> <p>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하고 이중 과반수를 행정정보 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 <u>집행기관</u>의 장이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p> <p>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u>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u></p> <p>④ ~ ⑤ (생략)</p> <p>⑥ <u>집행기관별</u> 심의회 구성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 또는 규정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u>&lt;신설&gt;</u></p>	<p>-----.</p> <p>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p> <p>① <u>공개대상기관</u>-----</p> <p>-----</p> <p>-----</p> <p>-----</p> <p>-----</p> <p>② -----</p> <p>-----</p> <p>-----</p> <p>-----</p> <p>----- <u>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공개대상기관</u>-----.</p> <p>③ -----</p> <p>-----</p> <p>-. <u>&lt;단서 삭제&gt;</u></p> <p>④ ~ ⑤ (현행과 같음)</p> <p>⑥ <u>공개대상기관별</u> -----</p> <p>-----</p> <p>-----.</p> <p><u>제7조의2(위원의 해촉)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u></p>

현행	개정안
<p>제8조(심의회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p>	<p>에는 해촉할 수 있다.</p> <p>1. <u>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u></p> <p>2. <u>제7조의3에 따라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u></p> <p>3. <u>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u></p> <p><u>&lt;신설&gt; 제7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u></p> <p>① <u>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u></p> <p>② <u>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u></p> <p>③ <u>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u></p> <p>제8조(심의회회의 기능) -----</p>

현행	개정안
<p>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u>집행기관의 장이</u> 공개청구된 행정정보의 공개여부, 공개범위, 공개방법 등의 결정을 심의회에 심의 요청한 사항</p> <p>2. (생략)</p> <p>3. 그 밖에 시민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하여 <u>집행기관의 장이</u>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회의에 부치는 사항</p> <p>제11조(서울특별시 심의회) ① <u>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한다.</u></p> <p>② <u>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언론담당관 및 시설계획과장으로 한다.</u></p> <p>제12조(평가 및 보고 등) ① <u>집행기관의 장은 정보공개의 운영실태 등을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이를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에 공개하여야 한다.</u></p>	<p>-----.</p> <p>1. <u>공개대상기관</u>----- ----- -----</p> <p>2. (현행과 같음)</p> <p>3. ----- ----- <u>공개대상기관</u>----- ----- -----</p> <p>제11조(서울특별시 심의회) ① <u>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u></p> <p>② ----- <u>행정국장</u> ----- ----- --.</p> <p>제12조(평가 및 보고 등) ① <u>서울특별시는 공개대상기관의 정보공개</u> ----- ----- -----.</p>

현행	개정안
<p>② (생략)</p> <p>③ 서울특별시장은 <u>집행기관</u>의 정보공개운영실태 등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매년 발간하여 공개한다.</p> <p>제13조(다른 제도와와의 관계) ① (생략)</p> <p>② <u>집행기관</u>의 자료실, 도서관 등에서 일반에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 간행물 등은 이 조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u>공개대상기관</u>----- ----- -----.</p> <p>제13조(다른 제도와와의 관계) ① (현행과 같음)</p> <p>② <u>공개대상기관</u>----- ----- ----- -----.</p>

[별지 제1호 서식]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 ▶ 조문상의 용어를 정비하고, 당연직 위원 변경 및 위원장의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등 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한 것으로 조례의 개정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미첨부 사유

- 조문상의 용어 정비, 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에 해당하지 않음.

### 4. 작성자 : 정보공개정책과 원기철